

최신 판례

‘헌인마을’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알선수재 등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 2018도19961]

‘헌인마을’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알선수재 등 사건의 최종 판결은?



■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의 요지¹⁾

- 피고인과 윤OO은 000도시개발의 회장 황OO, 부사장 황△△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일명 ‘헌인마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피고인과 윤OO은 2016. 3.~4.경 황OO, 황△△에게 ‘최OO을 통해 박근혜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음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외에 사기도 있으나 사기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

-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근 일명 ‘카페거리’에서 황△△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황△△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음
- 이로써 피고인은 윤○○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음

●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사기 포함 전부 유죄), 징역 3년 6월, 추징 1억 5,000만 원²⁾
- 원심 : 항소기각

2) 1심 판결문 중 추징 부분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윤○○의 관계,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 윤○○에게도 이익이 되는 점(피고인은 윤○○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3억 원 중 1억 95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고 그 중 약 2,600만 원을 독일 법인에 송금한 점, 나머지 금원의 용처나 피고인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윤○○은 이 사건에서 수수한 위 3억 원의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둘 사이에서 실제로 분배된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윤○○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균등하게 추징하기로 한다.

▣ 대법원의 판단

●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바,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의 가담 여부임

● 판결 결과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근거

피고인은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윤○○과의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 2015모2229]



■ 사안의 개요

● 재심청구 이유

-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음
 -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인 1948. 11. 14.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음 ⇨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 피고인들을 연행한 경찰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등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개시하여야 함

● 소송 경과

- 제1심 : 재심개시결정
- 원심 : 검사의 즉시항고 기각
- 검사가 재심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재심 사유로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한지 여부 (⇒ 검사의 재항고이유임)
-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위 부분도 쟁점이 되었음 (⇒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아님)

● 다수의견(9명)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므로 재항고는 이유 없음 ⇒ 재항고 기각

- ‘피고인들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하여 반란가담·협조 혐의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고,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증거로 할 수도 있음(확립된 관례임)
 - 재항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임

- 기록에 따르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함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재심을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집행된 사실은 판결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음
 -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작성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음
 - 여순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그 계엄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하여 위헌·위법 논란이 있으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의 성립은 인정됨
 -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재심제도의 목적에 부합함

● 제1 반대의견(2인: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

재심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파기환송 의견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하였고,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함
-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제2 반대의견(2인: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은 가능하지 않으며 타당하지도 않음 ⇒ 파기환송 의견

- 이 사건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사형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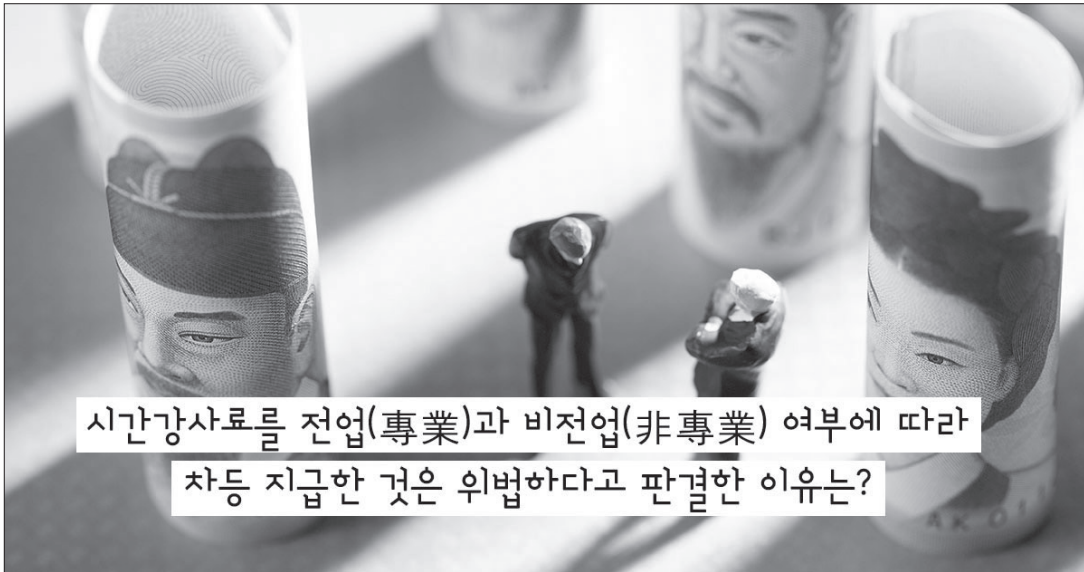
지 의문임. 설령 재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규범적 의미에서는 재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그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형사재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심도 불가능함. 공소사실을 알 수 없다면 재심사유의 존부도 판단할 수 없음. 재심을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구제가 될 지 의문이므로 재심은 타당하지 않음

■ 판결의 의의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확정된 최초의 사례임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대법원 2015두46321]



▣ 사건 개요 및 소송 경과

■ 사건 개요

- 2014. 2.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 사이에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의로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으로 하고, 전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음
-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

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음

- 2014. 4.경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음
- 피고는 위 통보에 기초하여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및 원심 판단

- 제1심과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예산상 문제로 인해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로 구별하여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님
 - 근로계약에 이미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아니함
- 제1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 판단 요지 : 원심판결 파기환송

■ 판단의 전제

- 대학의 시간강사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근로기준법 제6조) 및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로 실현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로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구체적인 판단

- 전업(專業)’의 의미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국립대학교인 OO대학교에 전속되어 일하여야 한다는 뜻인지, ②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③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함. 나아가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 사용자측의 재정적인 상황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고에게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은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주부는 전업 근로자나 전업 주부로 볼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함. 나아가 피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위에 있음

■ 결론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평등 원칙, 균등대우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것임

▣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모두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

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뿐 아니라 그 밖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판결임

- 추후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쌀소득직불금을 일부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기준일까 부정수령액 기준일까?

[대법원 2014두12697]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쌀소득직불금 지급 쌀소득직불금을 일부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기준일까 부정수령액 기준일까?

■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사안의 요지

- 피고는, 원고가 200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 거짓·부정이 있다는 이유로 직불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고, 그에 더하여 그 2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함
- 원심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나, 추가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함
-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하는 금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인지 아니면 부정수령액, 즉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금의 2배로 제한되는지 임

■ 대법원의 판단

● 다수의견(10명)의 요지: 추가징수액은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됨 ⇒ 상고기각

- 관련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추가징수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징수액이 직불금 전액의 2배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음
 - 거짓, 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임
- 추가징수제도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당시의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 부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움
- 구 쌀소득보전법은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도 또 다시 여기에 더하여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과도함

-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음

● **반대의견(2명)의 요지: 추가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 ⇒ 파기환송 의견**

-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남
-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 즉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금액 외에도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에 반함
- 추가징수액을 부정수령액의 2배로 해석해야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직불금 전액의 2배로 해석하면 비례원칙 위반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직불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지 추가징수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음

■ **판결의 의의**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추가징수액의 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위 최신판례 출처/법원사람들)